

Q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인지?

-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함

Q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

- ☞ 퇴직 교직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민간기업의 임직원 A가 학교법인의 비상근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민간 기업이 A에게 학교법인 업무와 관계 없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지?

- ☞ 학교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므로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다만 겸직하고 있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100만원 이하의 식사, 선물 등은 허용되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음

<공무수행사인>

Q 학교 또는 법인 내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닌 경우 그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음

Q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나요?

-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관련 규정만 적용되고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Q. 부정청탁을 하였으나 그에 따라 교직원등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자는 제재대상에 해당함

Q. 부정청탁은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하 교직원등에게 한 경우에만 성립하나요?

- ☞ 부정청탁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게 한 경우 성립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는 해당 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하급 교직원등뿐만 아니라 결재선상에 있는 부총장 등과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총장, 이사장 등의 상급 교직원등이 포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에 해당하는 상급 교직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교직원등에게 지시를 하여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교직원등은 처벌받나요?

- ☞ 상급 교직원등은 하급 교직원등에 대한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교직원등은 그 지시가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경우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임

Q.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일에 관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해도 되나요?

- ☞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금지되는 행위이므로 부정청탁자가 교직원등인 경우 징계대상은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교직원등은 형사처벌 대상임

Q.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에서 공개적으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 공개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요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그 방법은 불문함. 다만 공개적으로 요구한 후 다시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는 행위는 별개의 요구행위로 부정청탁이 성립될 수 있음

<부정청탁 신고 처리 관련>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부정청탁과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Q.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 직무를 수행하는 교직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는 부정청탁에 대한 상담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처리

③ 금품등의 수수 금지

Q.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 ☞ 교직원등은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됨

Q.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 ☞ 식사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선물한 경우 수수한 금액이 얼마인지?

-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를 입증할 수 있으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임)

Q.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선물, 식사 가액도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를 산정함에 있어 합산하는지?

- ☞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가액은 제외됨

Q.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과에 방문 시 가벼운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허용됨

Q.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지?

- ☞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며, 승진의 경우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고·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만 수수 가능

Q.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 ☞ 교직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지급 가능

Q.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원은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직원등이 결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Q. 외국 정부기관 고위급 인사 교류 시(회의/기관방문 등) 주고받는 선물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 국내 교직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 외국 또는 직무관련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법 제8조제3항제8호(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신고 및 처리

Q. 교직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지체없이 반환하고 신고한 경우 선물 제공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제공한 경우 실제 교직원등이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위반임(다만,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 신고한 공직자는 처벌되지 않음)

Q. 직무관련자가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교직원등이 그 자리에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 직무와 관련된 교직원등에게 금품등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청탁금지법 위반임. 이 경우 금품등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다만, 교직원등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처벌대상에서 제외)

Q.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배우자가 처벌받는지?

- ☞ 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교직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교직원등은 처벌됨. 즉,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은 아님(다만, 변호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Q.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인당 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

- ☞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기준이 5만원 범위 내의 경우만 허용(시행령안 별표1 제3호)되므로, 해당 사안에서 2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4만원 상품권을 받은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수수하는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5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직무관련된 공직자에게 4만5천원 식사를 접대하고 5천원 상당의 선물을 하는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 이 경우에도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가액기준 내 이어야 함. 따라서 음식물이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Q. 상급 교직원등이 위로·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교직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상급 교직원등과 하급 교직원등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교직원등 사이에서만 예외사유가 성립

Q. 교직원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함

Q. A대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총장인 B를 초청하였으며 총장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지?

☞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총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Q. 직무관련자료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

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반환 인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 제공자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되므로 제공자는 제재대상임

Q.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고,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Q. 교직원등이 자진하여 신고는 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가 되는지?

☞ 교직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제재가 감면될 수 있음

④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Q.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

Q.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 ☞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 횡수제한이 있음(월 3회 6시간)

Q. 강의등의 일자가 같은 날에 2회 강의등을 한 경우 사례금 지급대상인가요?

- ☞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모두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Q. 교원이 각종 법령상 시험출제위원으로 선정되어 시험출제를 하는 경우에 외부 강의등에 해당하는지?

- ☞ 법령상 시험출제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 또는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Q.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원고료도 포함되는지?

- ☞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됨